

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사유

2005. 12월 개정된 행정자치부의 「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준칙」에 맞게 우리구의 조례를 개정하여 통일성·형평성을 기하고 주민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

2. 주요골자

가. 관내 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확대

(안 제1조 내지 제7조)

- 동 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·운영함으로써 주민편의와 복리증진 도모

- “동사무소”로 규정된 조문을 “동”으로 개정

- 구청장과 동장이 관할 구역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도모

나.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기능 강화

(안 제7조, 제11조)

- 주민자치센터 시설·프로그램 운영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심과 역할 제고를 위해 동장이 위원회와 심의하여 처리

다.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변경 및 위원의 의무 강화

(안 제17조, 제18조 및 제20조)

-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개편(중선거구제)에 따라 동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

- 위원장·부위원장·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 및 자치센터 활성화 도모

-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노력, 각종 교육·연수 등 적극 참여하여 위원들의 책임의식 제고
- 위원은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해촉함으로써 위원의 책무 강화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8조, 같은법 시행령 제8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예고 : 2006. 5. 10 ~ 5. 30(20일간) ▷ 제출의견 없음

마. 기 타 : 표준조례안 시달(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-2271, 2005.12.6)

4. 검토의견

-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「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준칙」이 시달되어 우리구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

주요 내용으로는

- 안 제1조(목적), 제2조(정의), 제3조(원칙), 제4조(설치 등), 제5조(기능), 제6조(시설 및 프로그램) 등은 종전과 같으나 “동사무소”를 “동”으로 바꾸고
- 안 제7조(운영)는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동과 위원회가 협의·결정하던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결정하고
- 안 제11조(이용 등)는 주민이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, 회복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였으며

- 안 제17조(구성 등)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을 25인 이내로 구성하
되, 3인 이내의 고문을 두며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되도록 되어 있
는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장, 부위원장,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
서 2년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 및 자치센터를 활성화 되도록 하고
-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 노력, 각종 교육·
연구 등에 참여하여 위원들의 책임의식을 제고시키며, 지역사회에 물
의를 일으키거나 법률을 위반한 위원은 해촉하게 함으로서 위원의 책
무를 강화하게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됨